

문서번호	리테일 제2022-029호
발신	키움투자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
수신	수신처 참고
참조	수익증권 관련 담당 부서장
제목	환매 연기 안내 - 키움 러시아익스플로러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외 1건

1. 귀 행(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운용 중인 아래 펀드는 신탁계약서 제 28조(환매연기)에 의거하여 신규 설정 중단 및 환매 연기를 통보 하오니 관련 업무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 펀드: 총 2건

- 키움 러시아 익스플로러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키움 Eastern Europe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나. 설정 중단 및 환매연기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56조 제1호 나목 및 제 2호 다목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시행일

- 설정: 2022년 2월 25일(금)청구분 ~ 설정 재개시 (전 영업일 LT 이후 청구분 포함)
- 환매: 2022년 2월 24일(목)청구분 ~ 환매 재개시 (전 영업일 LT 이후 청구분 포함)

라. 기타

재개일정은 상기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설정 및 환매가 가능한 시점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수신처: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 교보생명, 교보증권, 농협은행, 대구은행,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부산은행, 비엔케이투자증권, 삼성생명,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수협은행,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엔에이치선물,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북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이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한양증권,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홍콩상하이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주식회사
마케팅본부장

